

『정책 & 지식』 포럼

제1102회

음대입시의 현실과 이상

◆ 일 시 : 2024. 09. 03 (화요일) 11:50-13:00

◆ 장 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

- 사회 :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발제 : 전상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교수)
- 토론 : 성연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신정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한국정책지식센터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http://www.KNOW.or.kr>

발 제

음대입시의 현실과 이상

전 상 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음대 입시의 현실과 이상

전상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요 약>

2023년 하반기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도권 몇몇 음악대학 입시비리 사건은 온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 사건의 실체는 일부 교수들이 입시 컨설터와 결탁하여 자신의 소속대학이 아닌 타대학 입학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시비리를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를 위배하였다는 명백한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과외교습을 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방해’로 인해 입시 공정성에 금이 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언론의 선동적 보도, 그리고 그에 기반한 대중적·즉흥적 대안은 입시의 본질적 목표를 흐릴 우려가 있다. 즉, 가시적 공정성에 함몰되어 각 대학과 소속 교수 및 그 문하생들이 구축해야 할 고유성과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획일적 대안이 강제된다면 대한민국 음악계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를 통하여 ‘음악분야 조기교육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영재교육 현황’, ‘과외교습 및 마스터클래스의 불법성과 필요성’, ‘음악대학 입시 평가위원 구성의 적절성’ 등 이 사건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몇몇 대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입시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 서론

음악대학 입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그것이 막연한 의심이건 침소봉대(針小棒大)이건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에 대한 솔직한 분석과 늦었지만 그에 기초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우선 가장 최근의 ‘음악대학 입시비리 관련 보도’ (KBS, 2024.06.10.)를 살펴보자.

음대 수험생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한 뒤 대입 실기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던 '비리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입시 브로커가 교수와 학부모들을 은밀하게 연계한 '삼각 커넥션'의 존재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입시 브로커 A씨와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 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에 있는 4개 대학의 실기 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고점을 준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됐다. 이들은 A씨가 대관해 운영한 미신고 교습소에서 과외를 진행했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하자 교수의 과외 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려거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려며 노골적으로 청탁했다. 교수들 역시 '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허위로 쓰는 등 과외 사실을 숨긴 채 대학교의 심사위원직 요청을 받아들였다. 교수들은 연습 곡목과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고점을 부여하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브로커 A씨와 교수들에겐 학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0서초구 일대에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679차례 성악 과외를 했다. 이들을 비롯해 대학 교수 13명은 입시 브로커 A씨가 운영한 미신고 교습소에서 이른바 '마스터클래스'로 불리는 성악 과외를 한 뒤 244회에 걸쳐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교수들은 30~60분의 과외 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20만~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교습소의 경우 인당 수강료가 5만 원으로 제한된다"며 "수험생이 1인 과외 교습으로 교수 레슨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소위 돈 있는 집안에서나 가능한 고액 과외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뿐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이 교수에게 청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수 B씨는 수험생 두 명에게 대학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 교습을 진행했고, 대학 합격 후 학부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 이때 합격한 학생 두 명은 대학 합격 후 해당 대학 성악과 교수의 제자가 되고자 비공식 오디션을 요청한 뒤 교수에게 사례비로 현금 등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음대 입

시에 이런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곤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은 "업계에 널리 퍼져 있지만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쉬쉬해왔다"며 "이번에야 수사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반민 심사 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음대 입시비리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교육부가 전면에서 나서 입시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대학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교육부와 대학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원법이 교원의 과외 교습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어 행정 제재도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대학에도 재발 방지책을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퇴학이나 파면 등 후속 조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보다 강력한 보안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간 소속 대학 교수가 입시 평가자가 되다 보니 '어느 교수한테 배워야 한다'며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소속 교수가 아닌 추첨으로 평가자를 뽑고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 또는 해명이나 반론이 아니다. 대중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선 음대입시의 세가지 쟁점, 즉 '과외교습', '업무방해', '지도교수 배정 오디션'의 이면을 솔직하게 살펴본 후, 대학 입시를 음악 전문교육과정에 있어 하나의 관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상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조기교육 필요성 및 현황

전문 음악인 양성에 있어 조기교육은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음악적 재능과 소양에 우선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고, 유소년기의 기술적 성취도가 음악가로서의 기본적 역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도권 조기교육은 각 지역의 예술계 중·고등학교와 예술의 전당 부설 '음악영재아카데미' (1999~)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학교수가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단 한 곳 뿐이다. 즉, 한예종 소속 교수 외 타 대학 교수는 법적으로 조기교육에서 원천적으로 배제¹⁾되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

어 있다. 그 결과 한예종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세계 굴지의 음악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그 외 대학은 상대적으로 그에 못미치는 교육성과를 보이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은 합법적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및 행정 등 기회비용 대비 입시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실질적 고급 조기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음악영재아카데미’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외 전무한 실정이다.

2. 불법 과외교습 논란

1) 과외교습

전술한 제도권을 벗어난 조기교육은 학원 또는 개인 교수자에 의한 ‘과외교습’²⁾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교수는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영재를 발굴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는 현실적 규제에 순응하지만, 일부 교수들이 구미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명분으로하여 ‘불법’ 과외교습,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3조(주1 참조)에도 불구하고 음성적 과외교습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은 원론적으로 영리업무금지³⁾, 부수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해당법률의 제정 취지에 동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시적 공정성을 위해 인재양성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훼손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였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교수가 조기교육 교수자로 굳이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교수 이외에 강사 또는 프리랜서 음악인이 얼마든지 있고 과외교습은 그들에게 맡기면 족하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자. ‘구미 선진국과 달리 교수의 조기교육 통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하나다. ‘입시 평가 공정성 제고’. 교원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입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강사는 과외교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주1 참조). 덧붙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봉사차원의 과외교습 또한 허용된다.⁴⁾ 물론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봉사차원에서 교습한 수험생이 있을 경우 해당 교수는 회피·제척 대상자로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 제한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해당 수험생에 대한 평가를 회피(동경예술대학)하거나 교수의 과외교습을 조기교육 또는 인재 리크루팅 차원으로 보는 구미 대학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도입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공정성이 목적의 본질을 훼손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광하는 음악인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불법과외교습의 성과’ 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2) 마스터클래스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에 대한 몇몇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명인, 대가, 거장이 직접하는 수업’, 특히 음악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일류 음악가가 지도하는 상급 음악 클래스’ 등. 이로 미루어 마스터클래스는 교수자(명인, 대가, 거장, 유명한 전문가, 일류 음악가 등의 표현)와 피교수자(재능이 뛰어난 학생, 상급 클래스 등의 표현)의 자격을 공히 충족하는 ‘일회성 교습’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스터클래스는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렇기에 구미 유수의 음악대학 학생들은 방학이면 각 곳의 마스터클래스를 찾고, 그곳에서의 배움으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16.>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로 일취월장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이력에 추가할만큼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받는다. 반면 한국 음악계의 마스터클래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않다. 이또한 불법과외교습의 한 형태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10여년 전에 다음과 같은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소속 교수들에게 숙지시켜왔다. 이를 비롯한 내부 자정노력에 힘입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시비리 사건은 1990년대 초반 단 한 건(본문 5. 대중적 대안의 한계에서 언급) 밖에 없었으며, 언론보도와는 달리 서울대 음대는 해당 비리혐의자들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기관임을 밝힌다(본문 3. 평가위원위촉에서 언급).

음악대학 전임교원 외부강의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악대학 전임교원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외교습 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음악대학 전임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봉사활동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전임교원은 대가를 받고 강의, 강연, 발표, 토론,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한 달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스터클래스 등이 입학고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콩쿠르 등의 심사) ① 전임교원은 당해 연도 대학 입학고사 실기곡목 공지일부터 실기고사 종료일까지 고등부 또는 수험생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학장은 제1항을 위반한 교원을 입학고사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고사 시작 후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 교원을 퇴실시키고 평가표를 무효 처리한다.

제5조(내부정보 누설 금지) 외부강의 등에서 음악대학 입학고사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전임교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학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1.18.)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평가위원 위촉(업무방해 혐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권고(최소 1인 이상의 외부 평가위원 위촉)에 반하여 ‘가능한한 외부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관련 언론보도 하나를 살펴보자.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던 음대 입시비리 의혹이 구체화되자 대학가에선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이 입시비리에 연루돼 대학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입시 전반에 대해 재검증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예체능 실기고사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 1인 이상의 외부 평가위원 포함을 권장하고 있다. 권고 사항이지만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대학이 외부위원을 선발 평가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서약서 말고는 외부위원의 입시비리를 막을 장치는 없다”며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 진척되는 대로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3.12.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623>

‘1인 이상의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라’는 대교협의 권고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각 대학 또는 해당대학 소속 교수 고유의 인재상 및 그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이라는 평가의 본질을 흐린다는 점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부평가위원 참여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일차원적 전제를 살펴보자. 위 언론보도에 나타나 있듯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이 입시비리에 연루돼 대학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대교협의 권고는 가급적 소속 전임교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서울대 음대의 방침과 수십년 전 입시공동관리위원회에서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타대학 입시평가를 위해 달려가던 웃지 못할 상황을 절충한 것처럼 보인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은 종종 평가의 목적 및 고유성과 배치된다. 모든 대학의 평가 기준이 같다면 대규모 대학 하나로 족하다. 모든 평가위원이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갖는다면 대학은 틀에 박힌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하다. 입시평가에 관한 각 대학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말살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은 너무 후진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대 음대가 연루된 부분을 살펴보자. 해당 학과 입시평가에 필요한 평가위원 수는 10인(각 5인 2개조), 반면 전임교원은 5인. 음대 자체 방침에도 불구하

고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 을 구하여 객관성을 제고하려면 부득이 부족한 5인의 평가위원을 타대학 교수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위촉 절차는 ‘전임교원 각자 외부 후보자 추천서 제출’ ⇒ ‘학과장이 수합하여 학장에게 제출’ ⇒ ‘후보군 중 5인을 채용 때까지 학장이 위촉’ 등 세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해당 학과장이 비리혐의자와 결탁하여 평가위원을 추천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다. 후보자 추천 시 불법과외교습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당일 다음과 같은 ‘서약서’ 를 받지만,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막을 방법 또한 없다. 그야말로 “서약서 말고는 외부위원의 입시비리를 막을 장치는 없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제한적이다.” 타인이 저지를 비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후진적 권고(외부평가위원 위촉)는 이제 접어도 될 때이다. 각 대학이 알아서 하고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서약서 - 면접(실기)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면접(실기)평가위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본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아래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입학본부에 알리고 본교의 회피·배제 적용 기준에 따라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임을 서약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회피 신고 대상(근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본교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본교 응시생과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위 법률」의 정의에 따라 레슨, 마스터클래스, 실기평가 등 그 명칭을 불문하며, 대면과 비대면(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등 그 형식을 불문함]
-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본교 응시생과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4. 그 밖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본교 응시생이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아울러 본교 입학전형 응시생과의 관계 확인을 위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수당 및 연말정산 자료의 가족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12. 2.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4. 지도교수 배정을 위한 불법(?) 오디션

‘합격 후 해당 대학 성악과 교수의 제자가 되고자 비공식 오디션을 요청한 뒤 교수에게 사례비로 현금 등을 준 혐의’에는 두 개의 쟁점이 있다. 우선 해당 교수가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또한 오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합격 후 해당 대학 성악과 교수의 제자가 되고자 비공식 오디션을 요청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구미 음악대학의 경우 입학지원서에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지도교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학을 지원한 이유가 그 교수에게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해당 교수는 그 학생의 선발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의 교수 선택권과 교수의 학생 선택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의 후속세대 양성 의무 측면에서 공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 교수별 수용 가능인원이 제한적이기에 교수는 자신에게 배우기 원하는 학생 중 일부를 선정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 소위 ‘입시 카르텔’로 매도되는 과외교습자의 추천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오디션’은 오히려 합리적이다. 학생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지도학생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학과(전공)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합격생이 자기소개 및 포부를 담은 지도교수 희망원을 제출하고 교수는 이를 토대로 자신이 지도할 학생을 선정한다. 문서 형태건 실기 시연(오디션) 형태건 가르침을 주고받을 사제의 연을 맺는 이러한 절차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5. 대중적 대안의 한계

“그간 소속 대학 교수가 입시 평가자가 되다 보니 ‘어느 교수한테 배워야 한다’며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소속 교수가 아닌 추천으로 평가자를 뽑고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

서론에 인용한 언론보도 중 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자. ‘소속 대학 교수가 입시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평가자 개개인의 예술적 기준에 따른 교육적 선택이 그 대학과 그 문하생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각 대학 또는 교수별 문하생의 고유성을 말살하기 원한다면, 동일한 잣대로 모든 대학을 서열화한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을 고착시키기 원한다면 소속대학 교수를 평가에서 배제해도 좋다. 하지만 공정성을 명분으로한 획일적 평

가가 소위 상위권 대학을 매너리즘에, 하위권 대학을 패배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점을 간과할 때 우리 대학들의 역량제고는 한없이 요원해진다. 덧붙여 소속 대학 교원이 평가를 주도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인식은 외부평가위원들에 의해 자행된 이 사건의 본질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1990년대 초, 서울대 음대 개교 후 지금까지 유일한 거대 입시비리 사건을 소환해보자. 당시 「입학고사 공동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음대 교수들은 자신의 소속대학이 아닌 당일 새벽에 지정받은 타대학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했다. 그리고 그날 서울대 음대 모 전공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5인 전원이 담합하여 비리를 자행하였고, 그로 인해 입학고사 재실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물론 관련자 5인 모두 파면 및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사건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소속대학 교수인가, 외부평가위원인가? 그러한 지침을 강제 시행한 기관인가? 과거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빌미로 외부평가위원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본교 교수를 배제하고 외부 교수를 위촉하자’는 제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추첨으로 평가자를 뽑고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 제안이다. 교수⇒학과장을 거쳐 2~3배수의 외부 평가위원을 추천받은 학장은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기까지 진땀을 흘린다. 입시 실기평가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정된 일정 또는 선약 때문에 외부인사 대부분이 학장 또는 입학처장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위촉에 선뜻 응하지 않는다. 추첨은커녕 이렇게 간곡한 청으로도 외부인사 위촉이 쉽지 않다. 실기고사까지 며칠 여유를 두고 의사를 타진하고, 수락할 경우 위촉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위촉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를 처벌(?)하자는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III. 결론

본고의 발제 의도는 전술하였듯이 비판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그에 기반하여 여기저기 나도는 대중적·즉흥적 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발전적·합리적 방안 모색에 일조하고자 함이다.

각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본질적 목적을, 각 대학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을, 그렇기에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안은 그 어느것도 구시대적이다. 표면적·획일적 공정성이 초래할 대학의 미래는 불공정성이 초래할 그것에 비해 나을것이 별로 없다. 잘못은 마땅히 처벌하고 시정해

야겠지만, 무분별한 비난과 선정적 보도, 특히 대중적 정책에 의해 대학입시가 좌우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수험생의 현재 능력이 아니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자리잡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하루아침에 온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수험생 개인의 지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가시적 공정성만을 담보하는 수능위주전형을 강제하는 여론과 정부정책에 대학은 학문적 양심을 결코 대응해야 할 때다. 어렵사리 구축하여 겨우 자리잡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학고사 전형방식(학력 및 실기능력 종합평가)을 하루아침에 전형요소별 합산이라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되돌린 유관기관의 정책 앞에 무력할 수 밖에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은 온전히 각 대학과 소속 교수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후 비리 또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면 될 일이다. 각 대학과 개별 학문(예술), 소속 교수와 그 문하생의 고유성에 기반한 다양성은 미래지향적 대학의 최소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그 조건의 필요조건 중 하나가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다. 표면적 공정성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대학입시제도가 초래한 결과는 획일화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 뿐이니까.

토론 |

“음대입시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토론문 |

성연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음대입시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토론문 I

성 연 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1. 조성진부터 임윤찬까지

조성진의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과 임윤찬의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은 우리나라의 클래식 영재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주목 받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예술의 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 전 세계 우수 연주자들이 대거 내한 공연을 하고, 조성진과 임윤찬 공연 티켓 예매가 몇 초 만에 매진되는 ‘K-클래식’은 현재 문화정책 및 한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간주되고 있다(Kim & Lee, 2018).

그런데 오늘 발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런 클래식 스타의 출현에는 훌륭한 스승과 함께 한 어린 시절의 교육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임윤찬은 콩쿠르 우승 직후 스승 손민수의 독특한 교육 철학 및 방식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피아노 기술이나 기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마치 인문학 또는 우리의 삶을 탐구하는 것처럼 작곡가와 작품의 근본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는 교육 방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성진에게도 그런 스승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신수정 명예교수는 어린 시절 조성진을 가르치며 역시 음악적 기술에 더해 작품, 작곡가, 시대, 가치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수행하였다고 한다⁶⁾.

대학 교수가 강사나 다른 일반 과외 교사보다 반드시 더 질 높은 교육을 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교수 외의 음악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입시 전형을 위한 레슨에 매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자 주변에서도 대학 입학 후 교수의 레슨을 받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처럼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학습이 필수적

5) “윤찬이는 윤동주와 릴케를 스스로 찾아서 읽었죠.” 조선일보(2022.6.21.).

6) “두 스승이 말하는 조성진... 전설적 연주자 계보 잇는 쾌거.” 연합뉴스(2015.10.21.)

이지만, 오늘 발제가 지적하였듯이 현재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대학 교수의 레슨을 받는 기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제외하고 원천 차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음대 입학 이후의 커리어

그런데 음대 입시가 오늘날처럼 과열되고 입시비리 사례가 종종 보고되는 이유는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의 1%만 조성진, 임윤찬으로 성장하고 나머지 99%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음악계의 현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실상 어린 시절부터 국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음악가는 애초에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주요 국제 콩쿠르 수상이 대학 입학 전인 10대 때 결정된다. 그럼 나머지 99%는 어떤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가? 이들은 음대 입학 이후에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가? 만약 국내 음대 입학 이후 해외에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연주자(실연자)에게 선택지는 단체(오케스트라, 합창단) 입단, 강사 및 교수 임용의 둘로 구분된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졸업한 대학의 이름과 그 곳에서 사사한 교수의 인지도가 이 두 선택지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음악 교육은 기본적으로 도제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며, 대학에 입학한 후 지도교수를 결정하면 이들에게는 소속 클래스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 클래스 안에서 제자 음악회, 콩쿠르 준비, 다른 연주기회 참여 등이 다소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같은 악기를 전공한다고 해도 클래스가 다르면 서로 간에 교류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입학 후 강사가 아닌 특정 교수의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다.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미술 쪽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미술은 클래스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각자 자신의 예술 세계를 창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스승의 스타일을 너무 그대로 따라하거나 닮아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 기술, 음악적 표현, 음악적 완성도를 만드는 데 있어 스승의 지도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사제 관계는 상당한 시간 동안 학생의 커리어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주관적 평가체계의 공정성 확보

한편 음악 평가 과정에 항상 이슈로 제기되는 주관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예술 분야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장르별 이론의 정립과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나름의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문제가 분명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주관성을 전제로 하는 게 예술 분야의 평가

이다. 발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 교수가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이 선호하고 선발하고 싶은 학생을 뽑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없이 해당 대학 교수만으로 실기시험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주관성은 필연적으로 공정성 이슈와 결부될 수 밖에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터진 장르가 성악이라는 점에서도 다시금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게 한다. 서울대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주로 입시비리, 입시문제가 제기되는 장르는 성악이다. 성악은 타 장르에 비해 조기 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음악적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투여해야 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원래 가진 신체적 조건이 우수하다면 몇 개월여의 노력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말이다. 또한 기악 분야는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한 (미스터치, 템포, 소리 크기 등)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 필자가 생각하기에 성악 장르는 상대적으로 더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이처럼 주관성이 높다는 것은 곧 심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권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학마다 서로 다른 사정을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부 심사위원 참여라는 조건을 내걸게 되는 것이다. 결국 높은 주관성에 대해 우리가 모두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 절차라는 걸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외부 심사위원 참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더라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단계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

4. 음악계의 변화 전망

마지막으로 입시비리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논할 때 향후 음악계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 것인지, 미래의 변화 전망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제안한다. 2024년 8월 22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는 <사라지는 것에 대한 노스탤지어>라는 공연이 열렸다.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지수 교수의 신작 “Code and Chord in Co-Creation” 이 세계초연되었다. 작품명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병행하여 작업한 작품이라 한다. 클래식 음악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실험적 단계라면 소위 실용음악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작곡이 보편화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내의 가상 악기, 전자 악기를 활용하면 실제 연주자 없이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연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음악대학이 미래에 양성해야 할 인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평가 도구와 방식은 무엇인가.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는 새

로운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현재 입시비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음악계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토론 II

“음대입시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토론문 II

신정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음대입시의 현실과 이상” 에 대한 토론문 II

신 정 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을 비롯한 시내 우수 대학들이 음악대학의 입시와 관련하여 비리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하여 음악교육의 특수성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음악대학의 입시 문제는 상당히 긴 역사적 뿌리와 오늘날 대학의 모형이 된 근대대학의 태동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자는 대학의 뿌리, 근대대학의 모형, 예체능계 졸업자의 진로(job market)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대학입시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학은 11-12세기 정도에 의학, 법학, 신학 등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탄생한 고등 “교육기관” 이다. 그 안에서 이뤄 지는 교육은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을 위한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이러한 전문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교양적 기초로서 철학이 가미되면서 “철학” + “전문지식과 기술의 교육(훈련)” 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근대의 교육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각 분야가 더욱 세분화되고,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대학은 좀 더 복잡 해졌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이 새로운 학문분야로 추가되고, 공학까지 등장하면서 대학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소위 “대학(university)” 이라는 사회기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가별로 접근이 다르다. 예를 들면,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나, 공학은 전통적으로 공과대학(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가르치는 사례가 많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학은 물론, 예체능 분야의 교육을 근대의 “대학” 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교육기관(institute)을 통해 훈련(교육)하는 사례들이 많다. 음악학원

(교), 미술학원(교), 체육학원(교) 등으로 부른다. 이 경우 보통은 교육연한이 대학(유럽에서 보통은 5년)보다 짧고, 학생의 선발도 일반 대학과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예체능 분야의 교육기관들은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당연히 “실기”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대학을 출범하면서 공학을 포함하여 예체능 분야를 “대학”이라는 기관에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다. 서로 이질적인 학문분야가 한 대학 속에 있기 때문에 대학 내에 있는 여러 학문분야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하나의 입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체적으로 중세의 신학, 법학, 의학 등 학문분야를 포함하여 대학에 있는 대부분의 학문분야는 중등교육에서 배운 교양의 수준(철학)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체능 분야는 중등교육에서 학습한 교양 외에도 다른 선발기준, 즉 실기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는 예체능 분야를 대학의 학문분야에 포함시키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둘째, 여기에 더하여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진로(job market)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직종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공부한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양보다 “실기”에 초점을 두어 학생을 선발하여 훈련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마친 이후 그들에게 충분한 직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졸업생들이 전문적인 예체능 분야에 종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수입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비교적 쉽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예체능분야 과외교습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이 심하고, 학교에서 예체능 분야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과외 의존도가 높다.

결과적으로 예체능계는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현실적인 진로 등과 맞물려 다른 어느 분야 보다도 과외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시장의 팽창은 수요자와 공급자들 간에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과당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학입시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소위 불법적인 과외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과외 교습자는 다른 경쟁자보다 높은 과외비를 받기 위해 대학과의 연계를 은근하게(또는 직접적으로) 과시하게 되고, 또한 실제 연계되는 사례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셋째, 다음은 대학입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입시를 무엇으로 바라보는지에 관하여 각기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들”을 가려 뽑는 것이 입시라는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등교육을 잘 이수한 학생과 대학 공부를 할 준비가 잘 된 학생이 같은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

면, 중등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의 역량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의 역량이 다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중등교육을 잘 이수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입학시킨다. 그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학수학능력평가 성격이 큰 SAT/ACT 등을 통해 대학 입학생을 선발한다(물론, 중등학교 생활과 성취도 중요하다).

우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사실상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학생부 전형 역시 중등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평가하는 전형의 요소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실제 대학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심층)면접, 실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층)면접이나 실기 평가는 학생들이 중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대학들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다양한 학교 외의 학습활동(과외)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학이 입시에서 중등교육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선발하지 않고, 대학 나름의 선발기준을 강화할 경우 사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의 대학진학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고소득층일 수록 소위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심해질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즉, 중등학교 이수에 대한 평가에 더하여 (심층)면접, 실기 등 대학이 희망하는 요소에 높은 비중을 반영할수록 과외수요는 늘어나고, 그러한 과외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인 신분이 고착화된다.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를 위한 어느 정도의 합의된 룰을 정하게 된다. 물론, 사회 어느 분야에나 모든 룰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정한 룰을 벗어난 불합리한 사회현상은 입시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회분야에도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매일 경험한다. 또한, 입시를 둘러싼 불법은 예체능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당경쟁이 일어나면 어느 분야에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대학은 윤리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고, 대학은 그러한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범위나 수준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서로 다른 학문분야가 공존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다른 학문분야와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대학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